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 변경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3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이해민의원안], [이해식의원안]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 변경	4

[이해민의원안], [이해식의원안]

I. 제안경위

1. 이해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2. 이해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민의원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제재를 남발하고 있어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상정해 월권을 행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특정 방송사에 대해 집중 표적심의를 일삼아 법정제재로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악용되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임.

심지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재조치를 방송사에 명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2. 이해식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 변경(안 제8조의2 등)

개정안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이해민의원안	이해식의원안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 <u>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8조제1항에 따른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 (이하 “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 ”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 ----- ----- ----- ----- -----.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가 추천하는 각 1명, <u>방송사</u> (제70조제1항에	② -----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 ----- <u>언론중재위원회</u>	② ----- ----- -----「 <u>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 방송 학계 · 대한 변호사협회 ·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選舉放送的 公正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舉放送的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 방송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다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방 송 사-

-9명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
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
송통신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방송통
신위원회는 不公正한
選舉放送을 한 放送社
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置 등을 지체없
이 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選舉放送審議委員
會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등에 관
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2제1항에 따른 선거방
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사무
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본다.
--	--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1)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나 보궐선거 등의 기간 동안²⁾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직선거법」

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97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방송위원회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1995년 지역민영방송의 확대와 종합 유선방송 개시 등 방송시장의 확장³⁾에 따라 방송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음.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필요사항 공표,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자체조사 및 불공정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등 결정통보, 불공정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왜곡 선거방송에 대한 협의 불성립 시 반론보도 방송청구의 심의·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5월 10일에 임기를 마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선 선거의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그 중 14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3) 1980년대 언론통폐합 조치로 탄생한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KBS, MBC를 중심으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왔음. 이후 1990년 방송법 개정으로 민영방송이 허용되고 경쟁이 도입되면서 1991년 서울방송(SBS)이 개국되었고, 1995년(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7년(전주, 청주, 울산, 인천), 2001년(강원), 2002년(제주) 등 지역 민영방송이 도입되었음.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은 1995년 3월 시작되었음.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관성 연구(2008)”

등 다소 과도한 제재 결정 및 불공정한 심사 등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는 등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⁴⁾

이에, 개정안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현행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정책에 대한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방송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방송심의기구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4) 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비용도 ‘역대급’, 경향신문, 2024. 5. 1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21447001>

선방위 안건 전수 분석...‘역대급’ 제22대 총선 선방위, 시사인, 2024. 5. 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2>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014.1.16.)

○전문위원 임재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위원 구성은 비슷할 수 있는데 밑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밑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민간인들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고 그것을 다 합쳐서 선관위로 가는 경우 그것을

한편, 개정안들 중 이해민의원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추천을 추가하도록 하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처분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데 비해, 이해식의원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추천 기관을 변경함.

<현행 및 이해민의원안, 이해식의원안 비교>

	현행	이해민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각 1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인 3.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포함 총 9인 이내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각 1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인 3.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포함 총 9인 이내	1.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각 1인) 2.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 추천 1인 3.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포함 총 9인 이내
선거방송이 공정하지 않을 시 제재 처분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방송통신위원회

※ 이해민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먼저, 이해민의원안과 관련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추천을 추가할 경우 위원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위원구성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방

다 공무원들이 한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방송과의 연관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임.

또한, 제재처분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선거방송심의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방송심의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으로, 이해식의원안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소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대신 위원 추천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관 변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나, 선거분야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들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선거방송 심의의 전문성 및 역량적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을 ‘언

론중재위원회’로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체계 정합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두 기관이 별개의 규칙을 제정하고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상이한 결정이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